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9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일반적으로 별칭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

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 및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협약·위탁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연구개발기관 임직원의 위반

행위의 유형과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② 연구개발성과의 연계·활용¹⁾을 통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